

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공무원 내부신고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부패에 대한 은정주의 청산과 공무원 내부조직에 상존하는 구조적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
- 엄정한 공직윤리관 확립으로 소속직원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적용대상을 사하구 소속 공무원으로 함(안 제2조)
-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요건을 정함(안 제2조)
- 부조리 신고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부터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로 함(안 제3조)
-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함(안 제5조)
-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(안 제7조)

3. 관계법령

- 부패방지법 제3조

4. 검토의견

□ 본 조례안은

우리구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내부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

□ 적법성과 타당성 측면에서는

2001.7.24 제정된 부패방지법 제3조에 “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하여 법적, 제도적 대책을 강구하고 교육, 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직원의 부패척결의식 고취에 적극 노력할 것”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응하고 있음

□ 재정적 측면에서는

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소의 예산이 소요되나 부조리 척결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불매 투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금액도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

※ 기 시행기관 관련예산(2007년)

기관별	부산시	남구	기장군
금 액	300만원	300만원	1,000만원

《 관 계 법 령 》

부패방지법 제3조

제3조 (공공기관의 책무)

-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.
-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,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.
- ③ 공공기관은 교육·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 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